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30 발의연월일: 2025. 2. 13.

발 의 자: 박성훈 • 이인선 • 김성원

이헌승 · 김기웅 · 김승수

이달희 • 이상휘 • 박충권

백종헌 · 조배숙 · 임이자

김도읍 • 최은석 • 조은희

서지영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, 이를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 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.

「정부조직법」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었는데,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·지원 등 보훈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바,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 및 정책기능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제기되고 있음.

이에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상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, 정책연구·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

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을 추진하는 바,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보훈정책개발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연수교육 업무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69조제2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129호),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13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제2항 중 "공단"을 "보훈정책개발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9조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	제69조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
수교육) ① (생 략)	수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	2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	
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	
<u>공단</u> 에 위탁할 수 있다.	<u>보훈정책개발원</u> .